

경운대학교 소수집단학생지원에관한규정

부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수집단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생활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이라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운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
2. 외국인 유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북한이탈주민 학생
5. 기타 사회적 약자로 판단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

제3조(지원조직)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소수집단학생의 유형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국제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21.10.01.>

제4조(지원의 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제공
2. 특별 학습활동 지원
3. 기숙사 우선 배정
4. 특별장학금
5. 도우미 및 멘토 지원
6.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장비의 제공
7. 특별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의 제공
8. 기타 소수집단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지원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